#### 전라남도 고시 제2022-121호

### 접종증명 - 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잠정 중단 안내

전라남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잠정 중단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2. 28.

# 전라남도지 사람

□ 적용기간: '22. 3. 1.[화] 0시 ~ 별도 안내 시 까지

#### ② 적용대상

-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책임자·이용자 등
- 집합·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관계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 등

#### ③ 주요 변경사항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접종증명 음성확인제 (방역패스)	○ 방역패스(청소년 포함)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
모임행사	<ul> <li>○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</li> <li>※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</li> <li>○ 취식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'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'토록하는 제한 해제</li> <li>-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</li> <li>○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.5배까지 가능</li> </ul>

## ④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사항

구분	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
공통	○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○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
결혼식장	○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(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)
장례식장 돌잔치	○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	○ '음식섭취 금지' 해제
실외체육시설	○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
국제회의 학술행사	○ '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(띄어 앉기 등)' 해제
종교시설	○ 정규종교활동(소모임·성가대 포함)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※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※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

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